

국제범죄의 개념과 현황*

이 증 화**

< 목 차 >

- I. 문제의 제기
- II. 국제범죄의 개념
 - 1. 기존의 국제범죄의 개념
 - 2. Transnational crime와 International crime의 구별의 필요성
- III. 국제성범죄(Transnational crime)의 현황
- IV. 결 론

I. 문제의 제기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교통수단과 통신 수단의 비약적인 발달을 가져 왔다. 이러한 발전은 민족국가가 형성한 국경이라는 확고하게만 보이던 울타리를 물리적으로는 제거하지 못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급격한 상호교류를 통하여 국경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이러한 세계화라는 새로운 환경은 특히 경제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하여 여러 국가의 다른 기업들이 국경이라는 장벽에 구애받지 않고 교역을 할 수 많은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유발하였다.

그러나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한 세계화는 주권이라는 제한으로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은 국제 법체계 공조의 약점을 이용하여 범죄의 국제화라는 부작용을 수반하게 되었다. 국제협력의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나, 현재 최고의 국제협력의 모델로 인정되는 유럽

* 본 논문은 2002년 5월 25일 제1회 경찰법학회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요원

연합(European Union)조차도 주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형벌권에 대한 협력은 미진한 실정이다. 이렇게 국제 협력 중에서 경찰상의 협력은 주권이라는 장벽에 막혀 있는데, 이런 사정을 이용하여 국제 범죄는 급격히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무엘 헌팅턴은(Samuel Huntington) 1990년대 동구권의 몰락으로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시대가 사라지자, 의하면 국가권위의 약화가 국제조직범죄를 등장시킬 것이라고 하였다¹⁾.

국제범죄의 급격한 영향력 확대는 한국도 예외일 수 없으며, 점차 국내범죄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새로운 국제범죄의 급격한 역할 확대는 사법기관의 관련부서의 업무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가시켰으며, 학계에서도 주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국제범죄에 대한 개념정립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범죄에 대한 연구도 주로 국제법·형법 등 법학분야에서 주로 논의되어, 실질적으로 국제범죄의 현황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범죄의 개념을 범죄학적 관점에서 정의하고 그 유형 및 현황에 대하여 연구함으로써 국제범죄의 연구를 심화시키고자 한다.

II. 국제범죄의 개념

1. 기존의 국제범죄의 개념

세계화와 더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제범죄』라는 개념은 영어의 International Crime과 Transnational Crime을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다. 전자는 국제법적 개념이며, 후자는 범죄학적 개념이다²⁾.

현재까지의 국제범죄의 개념은 국제법적 관점에서 통상 6가지로 구분된다³⁾.

첫째, 국제범죄란 그 구성요건과 소추, 처벌의 절차가 관습국제법 또는 조약에 의하여 직접 규정되는 국제법상의 범죄를 의미한다. 이것은 국제범죄의 실제적 규정과 그 범죄 위반 시 이행절차 모두 국제법에서 규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래서 이 경우는 매우 드물고 단지 2가지 대표적 예외가 있는데, 하나는 1945년 Nurenberg 전범재판이고 다른 하나는 1993년 UN安全保障理事會의 의결 827에 의해 창설된 유고슬라비아 전범 특별재판이다. 이 2개의 사례도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이행절차는 국제재판과 국내재판의 혼합형이다. 상기

1) Samuel Huntington, "The collision of civilization", p.35.

2) Mueller, Gerhard, "Combating transnational crime" Frank Cass 2001, p.13.

3) 이장희, "국제범죄 수사역량 강화방안", 치안연구소, 1997, p.12.

개념에 의하면 해적행위는 그 처벌절차를 완전히 국내법에 위임하고 있어 국제범죄가 될 수 없다. 국제범죄는 국제법상 국제책임문제로 다루어진다.

둘째, 국제범죄란 조약 등 실제적인 실정국제법에서 “국제법상의 범죄”(crime under international law)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국제범죄의 처벌절차의 규정에 상관없이 그 범죄의 구성요건이 국가책임을 전제로 실제적 실정 국제법에 명문으로 국제범죄라고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 이에 따르면, 집단살해(genocide)나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등만이 국제범죄에 해당되고 항공기 납치를 포함한 국제테러 행위들은 국제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납치억제를 위한 1970년 헤이그 협약에서 항공기 납치를 단순히 범죄(Offence)라고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1980년 UN국제법위원회가 마련한 국가책임을 조약초안에도 항공기 납치를 국제범죄로 명문화하지 않고 있다.

셋째, 국제범죄란 국제법이 규율하는 범죄라고 한다. 여기서 국제범죄는 국제법이 명문화한 것에만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국제법으로 규율되어 온 범죄가 모두 포함된다. 국내형법상 국외범도 실제법상이든 절차법상이든 상관없이 국제법으로 규율하기만 하면 이는 국제범죄가 된다.

넷째, 해적, 항공기탈취, 인신매매 등과 같은 형법적용에 있어서 세계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보호범익을 침해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한 국가의 보호범익만을 침해하는 국내형법상의 국외범은 국제범죄에서 제외될 것이다.

다섯째, 내국에서 형사소추를 하기 위하여 외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범죄, 예컨대 외국인이 내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내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행한 경우 등을 말한다.

여섯째, 범죄의 실행행위는 물론이고 범죄의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모든 형사사법과정에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제적 관련성을 가지는 범죄를 의미한다.

국제범죄의 개념은 위와 같이 국제법 학자에 의하여 국제법적으로 개념이 정의되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어 자주 이용되고 있고, 실무적으로 자주 쓰이는 국제범죄라는 용어는 실질적으로는 International crime이라기 보다는 내국인의 국외도피, 외국인의 국내에서의 범죄행위 등을 지칭하는 Transnational crime에 가깝다. 그러나 후자에 맞는 적당한 용어를 찾지 못하여 두 가지 용어가 국제범죄라는 국제법적 용어로 단순화되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국제범죄의 정의 대하여 김주덕(1990)에 의하면 Cherif Bassiouni의 저서를 인용하여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① 최협의로는 그 구성요건과 소추, 처벌의 절차 자체가 국제관습법 또는 조약에 의하여

4) 김주덕, “국제범죄 수사구조론” 법조, 제409호, 1990. 10, p.28

직접 규정되는 국제법상의 범죄를 의미한다.

- ② 협의로는 해적, 항공기 탈취, 인신매매 등과 같은 형법 적용에 있어서 세계주의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 ③ 광의로는 내국에서 형사소추를 하기 위하여 외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범죄, 예컨대 외국인이 내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내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행한 경우들을 말한다.
- ④ 최광의로는 범죄의 실행행위는 물론이고 범죄의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모든 형사사법과정에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제적 관련성을 가지는 범죄를 의미한다. 국제범죄라는 용어에 대하여 국월범죄(國越犯罪)라는 개념이 1980년대 들어서 형사과 학분야에서 종종 사용되고 있다. 국월범죄(transnational crime)란 2국 이상의 국민 또는 조직에 의하여 행하여지 범죄나, 2개국 이상의 국가의 영역에 있어서 행하여진 범죄를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후자의 경우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이때에 “행하여진”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격범의 경우 뿐만 아니라 범인은닉, 증거인멸, 장물에 관한 죄 등도 포함한다. 다만 국제적이라고 하는 말은 전세계적이라는 뉘앙스를 주고, 국월적이라고 하는 경우는 몇 개의 국가에 걸치는 의미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제범죄 또는 국월범죄로서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테러행위, 마약범죄, 경제범죄, 환경과피범죄 등이다.

그러나 실제로 위의 논문은 국제범죄의 개념 중 최광의 개념을 사용하여⁵⁾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범죄행위자는 범죄조직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 범죄지는 내국 또는 외국,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국가 영역에 걸치기도 한다.
- 처벌법규는 원칙적으로 속지주의에 의하여 범죄지 또는 결과 발생지의 내국형법이 된다.

본 논문에서도 international crime과 transnational crime을 구별하지 않고, 전자의 최광의 개념으로서 국제범죄 또는 국월범죄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적인 국제범죄의 개념은 단순한 해외도피범과 전쟁범죄자를 한 개념으로 묶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해외도피범의 경우까지 국제법상의 문제로 보기에는 이론적으로 무리가 있다. 따라서 세계화에 따른 범죄의 국제화 현상을 지칭하는 Transnational Crime에 대한 적절한 용어가 필요하다.

5) 김주덕, 전계서, p.29.

2. 세계화에 따른 국제범죄(Transnational crime)의 급속한 증가로 International crime과 Transnational crime의 구별 필요

1990년 초의 동구권의 몰락으로 교역의 장애가 되었던 이데올로기가 사라지고, 새로이 나타난 세계화 현상은 범죄활동의 범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하게 된다.

첫째,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교통수단 및 통신기술의 발전은 범죄의 전단계에 걸쳐 한 국가의 국경에만 머무르지 않고, 수 개의 국경을 넘나들며 이루어져 범죄가 **초국가화 또는 광역화**되었다. 한 국가에서 2, 3일 정도 머무르며 범죄를 저지르고, 제 3의 국가로 도주하는 경우가 흔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표 1> 출입국자 수의 연도별 현황

구분 \ 연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출입국자 총수	합 계	18,059,783	14,975,191	18,192,016
국 민	10,552,071		6,714,311	9,211,561	11,481,027	12,648,893
외국인	7,507,712		8,260,880	8,980,455	10,320,541	9,994,484
증감율	합 계		-17 %	+21 %	+20 %	+4 %
	국 민		-36 %	+37 %	+25 %	+10 %
	외국인		+10 %	+9 %	+15 %	-3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둘째,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는 전문적인 범죄인 뿐 아니라, 일반범죄인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쉽게 국외로 도피할 수 있게 되었고, **일반인도 국외여행의 증가로 인하여 국외에서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국제범죄가 일상화된 것이다.** 즉, 실생활에서도 쉽게 국제범죄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다. 2000년에만 5백만 명의 국민들이 해외로 나갔으니, 1년간 국민 10명당 1명은 해외에 다녀온 것이다. 이렇게 국제교류가 증가하고, 출국이 일상화되어 국제범죄에 누구나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표1 참조). 단순한 해외여행에서도 허위청구에 의한 카드사기를 당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도 외국인에 의한 범죄의 희생자가 될 수 있듯이(표2 참조) 국제범죄의 객체·주체가 일반화·보편화되었다. 국내에 불법체류자의 현황을 보면 국내에서도 외국인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표3 참조).

<표 2> 외국인 입국자 연도별 추세

구분 \ 연도	총 수	입 국 자	상륙허가자	지난해 대비 총수
1997	3,780,990	3,088,889	692,101	106.1
1998	4,109,997	3,506,154	603,843	108.7
1999	4,530,401	3,920,909	609,492	110.2
2000	5,212,729	4,370,596	842,133	115.1
2001	5,027,951	4,275,696	752,255	96.5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표 3> 불법체류자 현황

	97	98	99	00	01	02.5
불법체류인원	148,048	99,537	135,338	188,995	255,206	270,615

(경찰청 외사관리관실)

셋째, 국가의 주권개념에 기초하여 강력한 국경개념에 의하여 국제협력이 필요한 기존의 전형적인 국제범죄의 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활발한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희미해진 국경개념을 이용한 **모든 종류의 범죄가 2개국 이상이 관련되어 일어날 수 있는 국제범죄화되었다.** 국제범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마약, 인신매매 등에 국한하지 않고, 국내범죄라고 여겨졌던, 단순절도도 국제범죄의 유형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넷째, 국가의 개념이 약화되고, 정치체제가 안정되지 않은 국가를 중심으로 조직범죄가 정부의 역할을 하며, 그 세력을 확장하고, 세계화의 틈새를 이용하여 **범죄 조직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그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세계화를 통하여 이러한 현상이 쉽게 여러 국가의 범죄조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확대된 범죄 조직의 영역은 국제적인 기업과 같은 방식의 운영을 통하여 막대한 불법이익을 올리고, 몇몇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그 해악을 심각해지고 있다.

다섯째, 교역의 자유화, 세계화로 인하여 다른 국가와의 불법거래를 통한 비교우위로 인한 **범죄이익이 대폭 증대되었다.** 세계화이전에는 국가간 불법 거래는 국경을 통과하려면 세

관, 출입국관리, 경찰 등 많은 사법기관의 감시를 뚫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유럽연합에서는 한 회원국의 국경만 통과하면 다른 회원국의 국경은 별다른 통제 없이 통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제교류의 자유화를 통하여 범죄조직도 불법거래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각종의 자유무역협정도 범죄조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환경은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대규모의 마약거래나, 출입국이 까다로운 지역의 거래도 가능하게 만들어 범죄조직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준 것이다. 예를 들면 콜롬비아의 마약카르텔의 하나인 칼리 카르텔의 마약, 인신매매, 납치, 위조달러제조 등의 불법거래로 벌어들이는 연간 이익규모가 8억불로 다국적기업인 IBM이나 코카콜라, 삼성전자와 비슷한 규모의 이익을 올리고 있다.

여섯째, 국제사회에서 인식하고 있으나 주권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국제공조수사의 제약으로 각국의 사법기관은 국제조직범죄의 급격한 역할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4에서와 같이 국제범죄의 억제에 상당한 공헌을 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범죄인인도조약에 의한 인도실적이 10년간 단 9건에 불과한 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러나 국내법에는 규정조차 되어있지 않은 인터폴을 통한 실무적인 차원의 국외도피사범의 국내송환은 적은 비용, 짧은 기간, 단순한 절차로 실질적인 국제공조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이다(표5 참조). **국제법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단순한 국내법의 국외도피사범의 송환이나, 국내에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를 하나의 범죄학적 현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표 4> 범죄인 인도실적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계
미 국	1										1	2
호 주	1									1	1	3
캐나다									1			1
스페인					1							1
페 루										1		1
중 국										1		1
계	2				1				1	3	2	9

(경찰청 외사관리관실)

<표 5> 인터폴을 통한 국외도피자 송환실적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수배자	18	29	28	106	105	146	168	162	103	125
강제송환자	2	12	15	13	28	27	28	24	34	39

(경찰청 외사관리관실)

위와 같이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국제범죄는 사법기관의 외사분야에 대한 수요를 폭증 시키고(표6 참조)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서 자주 국제범죄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현상의 용어로 자리 매김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은 문규석(1999)에 의하면 국제범죄라는 용어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다의적인 의미로 국제적 성격을 지닌 해외도피범으로부터 침략, 집단살해 및 전쟁범죄와 같이 국제조약이나 국제관습법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범죄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내재판소에서 사실상 형벌을 집행할 수 없는 범죄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실무적인 범위를 벗어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⁶⁾.

<표 6> 외국인 범죄현황

연 도	1988	1990	1993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인 원	1,744	1,789	2,318	2,746	2,982	3,645	4,597	5,062	6,949

(대검찰청)

실무상의 필요와 현실적인 수요에 의하여 기존의 국제범죄라는 개념이 새로운 현상의 범죄와 맞지않아 문규석은 범죄의 예방, 범인의 검거, 수사, 소추 및 처벌을 위해 국가간 협력을 필요로 하는 국제적 성격을 지닌 범죄로서 국가간의 협력을 통해서 국내재판소에서 형벌을 집행할 수 있는 범죄를 국제보통범죄(international ordinary crime)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한다. 반면에 범인의 효율적인 진압, 인권보호, 관련국의 주권보호, 그리고 범죄행위의 집행에 있어서의 곤란성이라는 4가지 요소를 고려한 국제법학적인 국제범죄란⁷⁾ 범죄의 실행행위는 물론이고 범죄의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모든 국제형사법의 과정에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쟁범죄, 인류의 평화 및 안전에 관련된 범죄 등으로 독자적인 국제 수사기관의 수사와 ICC(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재판을 통해서 국내재

6) 문규석, "국제범죄 개념의 이론론적 분류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제7집(1999.12) p. 553.

7) 문규석, 전제서 p. 551.

판소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집행력을 행사 할 수 있는 범죄로서 국제조약이나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인정된 범죄라고 확연히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보통범죄라는 용어 역시 국제법적 시각의 용어로서, 세계화 현상에 따른 외국과 관련된 범죄의 증가라는 새로운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범죄학적 용어인 Transnational crime을 국제법적 용어인 International crime과 구별하기 위하여 전자를 국제성범죄, 후자를 국제범죄라고 하고자 한다.

국제성범죄는 범죄학적인 개념으로서 외국과 관련된 모든 범죄를 지칭한다. 국제성범죄는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되어지나, 수사, 처벌의 진행에 국제공조와 국제법과 관련되는 것이 다른 범죄와 구별되는 점이다. 물론 김주덕은 국월범죄(國越犯罪)⁸⁾ 또는 역외범죄(域外犯罪)⁹⁾, 문규석은 월경범죄(越境犯罪)¹⁰⁾라고 부르기도 하나, 부르기 편하고 의미상 국제법상의 국제범죄와 구별되면서도 유사한 인상을 줄 수 있다.

Ⅲ. 국제성 범죄(Transnational Crime)의 유형 및 현황

국제성 범죄를 국내형법에서 규정되는 범죄 중 외국과 관련되는 개념 정리를 하였으나, 특성상 두드러지게 국제적 성격을 갖고 있는 범죄의 유형을 제시하고,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국제성 범죄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국제성 범죄 중 특히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범죄는 마약과 인신매매라고 할 수 있다. 마약범죄는 생산지와 소비지의 가격차가 현격하게 다르기 때문에 국제교역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인신매매는 과거에는 정복국가가 피정복국가의 국민을 노예화하는 노예제도로 존재하였으며, 현재는 국가간의 국력차이가 존재하는 한 가난한 국가에서 부자국가로의 인신매매는 근절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제성 범죄의 속성이 드러나는 범죄 중에서 특히 국내의 현실과 비교하여 분류한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① 돈세탁(Money laundering)
- ② 불법마약거래(Illicit drug trafficking)

8) 김주덕, "국제범죄 수사구조론" 법조, 제409호, 1990.10, p 28.

9) 김주덕, "국제범죄 처벌을 위한 국제형법의 역할", 법조 496호, 1998.1, p 31.

10) 문규석, 전제서, p 551.

- ③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 ④ 사이버범죄(Cyber crime)
- ⑤ 테러리즘(Terrorism)
- ⑥ 위조화폐(Counterfeit currency)
- ⑦ 항공기 납치(Aircraft hijacking)
- ⑧ 조직범죄(Organized crime)
- ⑨ 불법무기거래(Illicit traffic in arms)

이러한 8가지의 국제성 범죄에 대한 논의는 각 범죄의 개념의 다양성과 각 국가마다의 범죄의 범위에 대한 차이로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정확한 개념정의보다는 일반적인 국제성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1. 돈세탁(Money laundering)

모든 범죄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범죄행위 후에 얻은 이익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만들어 소비하고자 하는 것이 모든 범죄인의 소망이다. 돈세탁이 직접적인 범죄행위는 아니지만, 범죄로 인한 이익을 정상적인 자금화 하는 돈세탁 역시 범죄행위의 연속으로 보아야 한다.

국제범죄 조직은 국제금융거래의 취약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마약, 인신매매, 불법무기거래, 국제사기 등의 국제성 범죄로부터 취한 자금을 국제 금융망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자금으로 세탁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인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마약범죄는 이익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돈세탁이 중요과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마약범죄의 억제책으로 자국 내의 마약거래자를 체포하는 수요자 억제정책에 실패하자, 남아메리카의 마약생산국의 정부를 지원하여 마약생산을 감소시키려는 공급자억제정책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연구 끝에, 최근에는 마약범죄로 유발된 이익의 통제를 통한 마약범죄 억제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돈세탁 문제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는 돈세탁이 각종 게이트에서 볼 수 있듯이, 뇌물 등의 자금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합법화시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국제범죄 측면에서는 주로 범죄 조직이 범죄로 인한 불법 이익을 국제금융거래를 통하여 정상적인 자금으로 세탁하는 것을 지칭한다. 돈세탁이 주로 금융제도가 허술하거나, 국의

을 위하여 금융거래를 유치하려는 작은 국가를 이용하게 된다. 유럽의 리히텐스타인, 안도라, 모나코¹¹⁾, 아시아의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¹²⁾, 그 외에 카리브해의 작은 섬 국가들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¹³⁾.

세계적인 돈 세탁의 규모는 세계총생산의 2-5% 정도로 추산되며, 액수만도 6천억-1.5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6천억 달러라면 스페인의 GDP와 동등한 정도의 막대한 불법자금이 세탁되고 있는 것이다¹⁴⁾.

아직까지 국내 범죄조직의 규모가 국제금융거래를 할 정도로 크지도 않고, 다행히도 국내의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높지않아 국내금융기관을 통해서도 충분한 돈 세탁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내 범죄조직에서 외국의 은행을 통한 돈 세탁이 발견되지 않고, 기업에서 비자금 조성을 위한 돈 세탁이나, 탈세를 위한 자금 도피사례가 있다.

2. 불법마약거래(Illicit drug trafficking)

마약범죄는 생산지와 소비지의 가격 차이가 막대하여 국제거래가 필수이며, 이 엄청난 이익에 현혹되어 대부분의 국제범죄조직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마약은 산지와 소비지역의 가격격차로 인하여 국제무역을 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 단순히 산지와 소비지역의 가격차만 비교한다면 마약거래 만큼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품이 현재로서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버마 산지에서 700g당 \$2500 하는 것이 소비지역인 미국의 뉴욕거리에서는 \$ 280,000에 팔리는 것이다. 산지가격의 100배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한 것이다.

게다가 광고를 하지 않아도 암시장에서의 소비자는 무한하게 존재하며, 잠재 소비자도 대기하고 있는 수요과잉 시장의 모습을 보인다. 막대한 이익을 내는 거래에 대하여도 관계 당국에서 세금을 납부하라는 요구를 않으니 세상에 이보다 좋은 무역거래는 없는 것이다. 마약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으로 세계의 거의 모든 범죄조직은 마약거래에 직, 간접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 거래되는 마약만 한해에 620억불이라는 막대한 액수의 불법 지하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마약거래 불법자금으로 범죄조직이 운영되고, 공무원의 부패를 조장하며, 건전한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공공의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11) "Tax haven hall of shame", Economist, 2002. 02. 27.

12) Rufi Vigilar, "Asia-pacific seven on dirty money list" CNN.com, 2002. 6. 24.

13)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http://www1.oecd.org/fatf/MLaundering_en.htm.

14)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http://www1.oecd.org/fatf/MLaundering_en.htm.

헤로인(아편)은 전통적으로 마약범죄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재, 아프카니스탄에서 전 세계 헤로인의 70%가 생산되고 그 외에, 미얀마, 라오스, 태국의 국경지대인 Golden Triangle에서도 나오고 있다¹⁵⁾.

아프카니스탄에서 생산된 헤로인은 주변의 파키스탄, 인도, 타자크스탄, 이란을 거쳐 마약거래 루트로 유명한 발칸반도를 거쳐 유럽시장에 도달한다. 주로 Golden Triangle에서 생산된 헤로인은 주변의 동남아 국가를 경유하여 미국, 캐나다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한국도 경유국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¹⁶⁾. 남아메리카에서는 콜롬비아가 헤로인을 생산하고 있는데, 대부분 주변국을 거쳐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소량이 거래되고 있다.

코카인은 대부분 남아메리카에서 전 세계 헤로인 80%를 생산하고 있다. 남아메리카 코카인의 거의 60%를 콜롬비아의 고지대에서 제조되고 있다. 콜롬비아는 마약의 백화점으로 대부분의 마약 종류를 모두 생산하고 있다.

콜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대부분의 남아메리카 국가들도 마약의 생산, 제조, 거래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좌익반군 등 많은 군벌의 존재로 정치가 불안정하고, 콜롬비아의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약화되었다. 반군들은 마약거래를 통하여 중앙정부와의 전쟁에 필요한 군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국 유학생들이 들여와 복용하고 있으나, 많은 양이 거래되고 있지는 않다¹⁷⁾.

카나비스는 대마초라고 불리는데, 재배가 쉬워 국내에서도 생산되고, 소비되어 60-70년대는 마약거래의 주종을 이루기도 하였다. 좀더 강한 마약을 찾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생산 및 거래가 많이 줄었다.

네델란드 등 일부국가에서는 중독성이 약하고, 단순 복용으로 인한 범죄자의 양산, 마약 구입을 위한 2차 범죄의 방지를 목적으로 카페 등의 장소를 이용한 소량의 카나비스 거래를 합법화하고 있다. 그러나 카페 주변에 헤로인, 코카인 마약 딜러들이 꼬이면서, 우범지대화하여 합법화 정책이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대마초는 재배가 쉬워 거의 세계 모든 국가에서 생산, 제도, 거래되고 있다. 특히 네델란드는 많은 가정에서 자급용으로 대마초를 재배하고 있어 가장 많은 가정용 대마초를 재배하고 있다. 그 외에는 캐나다, 미국의 산간지역에서 대규모로 재배되어 자급자족의 형태로 자국에서 소비되고 있다.

대마초의 국가간 밀거래는 주로 북아프리카에서 많이 재배되어 타르의 형태로 변형시킨 하쉬쉬가 유럽 및 미국, 캐나다로 유입되고 있다.¹⁸⁾

15) 인터폴 헤로인 연례 보고서 (1999).

16) DEA, "AFGHANISTAN COUNTRY BRIEF", Drug Situation Report, September 2001, <http://www.usdoj.gov/dea/pubs/intel/intel0901.html>.

17) DEA, "The Drug Trade in Colombia : A Threat Assessment" 3. 2002. <http://www.usdoj.gov/dea/pubs/intel/02006/index.html>.

합성마약은 전통적인 헤로인, 코카인, 카나비스에 비해 급속히 제조, 거래, 복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취향에 맞추어 합성마약의 효과를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하여 젊은 층이 많이 선호하고 있다.

거의 진통효과를 가진 모든 의약품 및 화약제품이 마약성분을 가지고 있다. 형태도 다양하며, 제조도 비교적 쉬어 많은 마약조직이 합성마약 제조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요즘 연예인들 사이에서 복용되어 문제가 되고있는 엑스타시, 메타암페타민계열의 필로폰의 거래가 동아시아지역에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전세계적으로는 엑스타시가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다¹⁹⁾.

합성마약은 다른 마약에 비해 단 1회의 사용으로도 강한 중독효과를 가지고 있다. 마약 제조자조차도 부작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성분이 혼합제조되어 복용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음에도, 오히려 강한 효과에 매력을 느껴 더욱 사용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필로폰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급속히 제조, 거래되고 있고, 주로 중국에서 제조되어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 국내에서의 마약 구입이 어려우면, 마약구입이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동남아 국가에 여행하면서 마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국내 범죄 조직도 마약거래의 인한 막대한 이득을 위해 주변국의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마약거래에 개입하고 있다. 특히 중국을 통한 마약거래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마약 수사기관 간의 협력부족과 마약수사 관련 법의 미비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마약문제가 범죄조직에 의하여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한 미국, 캐나다, 유럽은 마약수사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정보원의 이용, 수사관의 신분가장을 위한 마약거래, 도청 등을 통한 수사를 합법화하였다²⁰⁾. 이렇게 효율적으로 수사기관이 점 조직으로 철저히 조직화 되어있는 마약 조직범죄 수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법은 이러한 규정이 없어 범죄조직의 상부는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거래 하수인만 검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수사관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상의 미비점도 마약이 급속히 국내에 전파되고 있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권을 중시하는 선진국에서 수사기관에 합정수사 같은 권한을 주는 것은 심각한 수준의 마약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가 국가발전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18) 인터폴 카나비스 연례보고서, 1999.

19) DEA, "Chemical Diversion and Synthetic Drug Manufacture", 1, 2002, <http://www.usdoj.gov/dea/pubs/intel.htm>.

20) 황철규, "미국의 비밀수사 연구"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집, 제14집, 1998, p.394.

것이다. 한국도 아직은 초기 단계인 마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5-10년 사이에 미국이나 유럽같이 심각한 수준의 사회문제화 할 것이다.

마약 정책의 주류는 치료와 교정을 위주로 하는 정책으로 가야하고, 수사기관은 조직범죄, 마약거래로 인한 이익환수를 위한 돈 세탁으로 수사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3. 인신매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노예제도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인신매매는 세계가 민족국가로 확립된 이후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워낙 은밀하게 인신매매가 이루어져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미국 국무부에서는 미국 내에서만 연간 5만 명의 인신매매가 이루어진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 외 서유럽에서만 50만 명 가량의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는 연간 4백만 명의 인신매매가 범죄조직에 의하여 노동력 착취, 매춘 등을 위하여 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다²¹⁾.

인신매매는 대륙별로 특성을 갖는다. 동남아시아에서 중동루트는 주로 노동력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 내의 인신매매는 주로 매춘을 위한 것이다. 미국도 외교관, 국제기구 공무원들이 가정부등으로 외국인을 고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으며, 동유럽과 러시아의 여성들의 인신매매도 범죄조직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러시아 여성들 대부분이 범죄조직에 연관되어 국내에 입국한 것이다. 최근에는 북한 여성의 매춘 및 노동력 착취를 위한 중국 내 인신매매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국제기구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인신매매는 경제적인 이유로 주로 후진국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불법이민에 관대한 선진국을 향해 이루어진다. 인신매매의 출발국으로는 아프카니스탄, 알바니아, 방글라데쉬, 벨라루시, 불가리아, 캄보디아, 중국, 크로아티아,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코소보, 멕시코, 미얀마, 파키스탄,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루마니아, 태국, 베트남 등의 후진국이다. 목적지는 오스트리아, 호주, 벨기에, 캐나다, 중국의 홍콩, 마카오, 두바이, 유고, 그리스, 독일, 이스라엘, 이태리, 일본, 네델란드,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위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²²⁾.

4. 사이버 범죄(Cyber crime)

사이버 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21)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2002. 6.5, p. 1.

22) 미국 국무부, 전계서, p.5.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표현하는 용어다.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컴퓨터 해킹사건의 50% 이상이 외국에서 침입하고 있고, 40%는 접속경로 미상이나 대부분 외국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80%이사의 컴퓨터 해킹사건은 국제성 범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²³⁾.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인터넷 등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익명성, 통신망을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세계의 어느 곳의 범죄대상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고, 바이러스의 경우 통신망을 통하여 순식간에 전파되는 신속성,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는 국가, 국경이라는 개념자체가 없어져, 쉽게 수십개 국가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고, 피해를 줄 수 있는 국제성을 특징으로 한다.

사이버 범죄는 정보통신망 자체를 공격하는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일반범죄를 사이버 공간을 수단으로 하는 일반 사이버 범죄를 구분할 수 있다²⁴⁾.

사이버테러형 범죄는 개인의 정보와 시스템에 피해를 입히는 것에서부터 크게는 국가전체의 신경망을 파괴하는 범죄까지 피해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간 12조원, 독일에서는 연간 11조원이라는 천문학적 피해액이 해킹 등의 범죄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 컴퓨터바이러스 제작이나 유포를 통한 범죄가 있는데, 2000년 5월경에 발생한 러브바이러스로 인한 국제적인 피해액만 1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반 사이버범죄는 일반범죄를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실행하는 것인데, 주로 불법사이트운영,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명예훼손, 통신사기, 음란불법물 배포 같은 범죄들이다. 이런 종류의 범죄들은 사이버 공간의 강력한 전파성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동시에 피해를 입힐 수 있고, 피해도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수사하는데도 상당한 기술적 지식과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범죄와 구별된다.

5. 위조지폐

위조지폐 범죄는 지구상에 화폐경제가 등장하면서, 지폐의 액면가와 지폐 제조비용의 차이에 대한 유혹으로 자연스럽게 등장하였다. 과거에는 자국 화폐 위조범죄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세계화로 인하여 주요화폐가 주로 위조의 대상이 되었다.

미국 달러화 위조의 70%는 1990년대 이후 미국의 공급자 억제위주의 마약정책을 시행하

23) 양근원, "사이버 범죄의 특징과 수사방향" 수사연구 200호(2000. 6) p.16.

24) 양근원, 전계서, p.18.

면서 최대의 마약을 공급하던 콜롬비아에서 마약제조가 어렵게 되었다. 마약 카르텔이 미국에 대한 보복심리와 마약사업을 대체할 새로운 범죄시장으로 미국 달러화의 위조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이에 마약으로 벌은 자본으로 기술자 양성과 인쇄기계를 구입하여 본격적으로 위조달러화의 제작에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위조달러의 70%가 콜롬비아의 범죄 카르텔에서 제조하여 유통시킨 것이다²⁵⁾.

그 외 지역은 체첸, 코소보, 유고슬라비아 등 중앙정부의 권한이 미약한 동유럽지역에서 위조지폐를 제조하여 서유럽 지역에 유통시키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이 심각한 위조지폐 범죄문제를 앓고 있다. 특히 중국의 남동부 해안 지방이 위조지폐 제작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2001년에는 중국 총리의 주도로 6개월 간의 위조지폐와의 전쟁을 벌여 10,663건에 13866 명을 체포하고 미화 26백만 달러의 위조지폐를 압수하였다²⁶⁾.

북한은 위조달러를 제조문제는 미국의 위조지폐 수사를 전담하는 Secret Service는 가장 최고의 위조지폐로 ‘슈퍼노트’라고 불리는 위조지폐를 꼽는다. 이는 정말 정교하게 위조되어, 전문가라도 식별하는데 애를 먹는다. 화폐를 인쇄하는 데는 일반 인쇄물과 달리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인쇄기계도 상당한 고가의 특수 기계라 중앙은행만 구입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는 ‘슈퍼노트’ 정도의 지폐를 인쇄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지폐 인쇄기계는 영국의 De la rue 사에서 세계 150여 개국의 중앙은행에 공급하고 있는 독점시장으로, 한국 조폐공사도 동 회사의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 De la rue사의 기술 담당 수석이사와의 대화 중에 애프터 서비스를 위해 전세계를 방문하였는데, 북한과 이란만 기계를 보여주지 않고, 소모품만 수입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북한 외교관의 위조지폐 소지죄로 검거된 사례를 종합해 보면 북한의 조직적인 위조지폐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Secret Service와의 회의에서도 이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며, 오히려 북한의 위조지폐 제작기술에 감탄을 하고 있을 정도다.

유로화의 출범은 위조지폐의 새로운 시장으로 위조지폐 범죄는 유로의 출범으로 새로운 전기가 도래하였다. 역사상 유례없는 12개국 단일 통화로 한 범의 위조지폐 제조로 12개국에서 유통시킬 수 있는 거대 위조지폐 유통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2002년 1월 1일부터 유통되는 유로화는 인구 3억의 유럽인구와 세계 GDP의 19%를 차지하여, 미 달러화와 견주는 세계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할 것이 분명하다. 유로화의 출범을 위하여 에펠탑 24개의 무게에 해당하는 500억 개의 동전과 지구와 달을 5번 왕복이 가능한

25) 미국 비밀수사국, “위조미국달러화 동향” 2002. 위조지폐국제회의 발표자료.

26) Miriam Donohoe, “China faces up to its counterfeiters”, The Irish Times, 2001. 06. 29.

15억장의 지폐를 발행하였다²⁷⁾. 특히 한 장의 위조유로화를 제조한 단일범죄가 즉시 12개국의 공동의 범죄로 처벌되는 실질적인 국제범죄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한국은 현재 위조지폐범죄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다. 한국은행권 최고권 지폐가 지나치게 낮아, 위조에 따른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 원화 위조지폐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같은 규모의 경제를 가진 외국에 비하면 경미한 정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500유로를 원화로 환전할 경우 60만원 상당으로 만원, 오천원, 천원 지폐를 섞어 환전한다면 적어도 70개의 지폐를 받게 되고, 지갑에 넣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또한 자기앞수표의 짧은 유통기간으로 인한 낭비, 은행업무의 비효율성, 외국관광객의 환전 불편 등을 고려하면 5만원, 10만원권의 발행을 고려해 볼 만하다. 물론 고액권의 발행 전에 위조원화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다²⁸⁾.

외화위조의 경우는 자국화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속기관에서 등한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환 자유화와 월드컵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입국하는 현실에서 국내 시중은행에는 위조 유로화 탐색기가 한대도 없는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중국 등에서 유통되는 위조달러화가 현금을 선호하는 보따리 장수의 손을 통해 상당수 동대문, 남대문 시장, 부산의 국제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조지폐로 판명될 경우의 손해를 염려하여 그냥 유통시키고 있어 위조전문 국제조직범죄의 대상국가로 지목될 수 있는 것이다.

IV. 결 론

세계화의 영향으로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져 가는 국제범죄에 대처하는 한국의 실정은 아쉬운 점이 많다.

국제성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조직화 되어 그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예를 들면 법령의 미비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인터폴의 적색수배서가 수배자의 체포영장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국내법의 현실은 안

27) Francesco Guerrera, "The Practical Challenge of turning Euro concept into hard cash", The Financial Times, 2001. 5. 31

28) 이종화, "유로화의 유통에 따른 2002년 월드컵 위조지폐 위험성 평가" 제 2회 인터폴 은행-경찰회의, 2000. 11. 16-17.

타까운 심정이다. 예를 들면 인터폴의 적색수배자인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라덴이 한국에서 체포된다 하더라도 인터폴 적색수배서²⁹⁾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국내 형법상으로는 체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일찍이 국제범죄의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미국, 유럽의 선진국은 인터폴 적색수배서의 효력을 자국의 법에 명기하거나, 범죄인 인도조약에 명시하는데, 국내법은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경찰은 오사마 빈라덴을 법률적으로는 체포할 권한이 없고, 판사도 영장을 발부할 수 없는 것이다. 인터폴 적색 수배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입법이 속히 필요하다³⁰⁾.

- 세계적인 수사 기관인 FBI 요원이 신분을 가장하고 범죄조직에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직 전체를 소탕하는 장면을 미국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에서는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같은 장면이라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선진국이 마약, 조직범죄, 위조지폐범죄, 테러 등 사회에 끼치는 해가 크면서 수사가 어려운 범죄는 경찰관이 정보원 이용, 합정수사, 경찰관 신분위장 수사, 신분 위장 시 불법행위 등을 법으로 허용하나, 국내법에는 이러한 고도의 수사행위 전부가 불법인 것이다.
- 또한 최근의 영국에서의 유학생 살인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늘어나는 해외교류로 해외에서의 한국인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재외공관의 경찰관파견이 정부의 예산, 인원 동결로 재외교민 보호가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교민, 유학생, 관광객이 많이 찾는 영국, 독일에는 한 명의 경찰관도 파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제어 : 범죄, 조직범죄, 국제범죄

29) 적색수배서에 대하여는 국내문헌으로는 문규석, 경찰의 지역간협력 및 아·태폴 창설을 위한 기반조성 방안, 연구보고서 2001-10, 치안연구소, 2001, 143쪽 참조. 이외에도 청색수배서, 녹색수배서, 황색수배서, 흑색수배서 등이 있다.

30) 경찰청, "국외도피사범 실태분석 및 송환방안" 2002. p.62.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문규석, 경찰의 지역간협력 및 아·태폴 창설을 위한 기반조성방안, 연구보고서 2001-10, 치안연구소, 2001.
- 김주덕, "국제범죄 수사구조론" 법조, 제409호, 1990. 10.
- 김주덕, "국제범죄 처벌을 위한 국제형법의 역할", 법조 496호, 1998. 1.
- 문규석, "국제범죄 개념의 이원론적 분류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제7집, 1999. 12.
- 양근원, "사이버 범죄의 특징과 수사방향" 수사연구 200호, 2000. 6.
- 이장희, "국제범죄 수사역량 강화방안", 치안연구소, 1997.
- 이종화, "인터폴과 국제범죄" 신동아, 2002. 6.
- 이종화, "유로화의 유통에 따른 2002년 월드컵 위조지폐 위험성 평가" 제2회 인터폴 은행-경찰회의, 2000. 11.
- 황철규, "미국의 비밀수사 연구"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집, 제14집, 1998.
- 미국 국무부, "인신매래보고서" 2002. 6. 5.
- 미국 비밀수사국, "위조미국달러화 동향" 2002. 위조지폐국제회의 발표자료.
- 인터폴 카나비스 연례보고서, 1999.

[국외문헌]

- Mark Findlay, "The globalization of Crim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Petrus Van Duyne 외 공저, "Cross-Border Crime in a changing Europe" Nova Science, 2001
- Michael Woodwiss, "Organized Crime and American Power" University of Toronto, 2001
- Daniel Koenig and Dilip Das,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 Lexington Books, 2001
- Committee on Law and Justice,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National academy Press 1999

- Combating international Crime in Africa, Hearing before the subcommittee on Africa of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07, 1998
- Russian Organized Crime in the United States: Hearing Before the Permanent Subcommittee on Investigations of the Committee on Governmental Affairs, U. S. Senate, 4, 1998
- James R. Richards, "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Cybercrime, and Money Laundering: A Handbook for Law Enforcement Officers, Auditor", CRC Press, 1998
- President's Commission on Organized Crime, "The cash connection: Organized crime, Financial Institutions and Money laundering" Books for business, 2001

[Abstract]

Reality and prospect of the international crime

Lee, Jong-Hwa

Since the collapse of the communist countries in the 90s, the crimes involved more than a country have increased sharply due to the dilution of frontier. Particularly, the globalization of economy has boosted the transnational crime. The transnational crime is not a word which has legal meaning, but is that of criminology. But in Korea, the international crime and the transnational crime have not been distinguished in term.

The situation of transnational crimes has seriously influenced on the illegal drug trafficking, the money laundering, the human trafficking, the counterfeit banknotes and the cyber crime. But for the combating transnational crime, the new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such as the legalization of the red notice of the Interpol, the reform of the extradition law.